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용역보고서

2012. 10. 15

제 출 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0. 15

용역수행기관 : 신화회계법인
연구책임자 : 임 중 희
참여연구원 : 장 태 일
 김 진 봉
 김 석 재



- 목 차 -

| | |
|--|----|
| I. 서 론 | 1 |
| 제 1 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등 | 1 |
| 제1절 용역추진배경 및 목적 | 1 |
| 제2절 용역범위 및 목표 | 3 |
| II.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5 |
| 제 1 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 및 연구방법 | 5 |
| 제1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 5 |
| 제2절 연구방법 | 5 |
| 제 2 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 7 |
| 제1절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 7 |
| 제2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 16 |
| 제3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 36 |
| III.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 37 |
| 제 1 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제정 필요성 | 37 |
| 제1절 공공디자인의 의의 등 | 37 |
| 제2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필요성 | 41 |
| 제 2 장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도출 | 47 |
| 제1절 국가 등의 용역보수 산출모형 | 47 |
| 제2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모형 도출 | 53 |
| 제3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안) | 61 |
| 제 3 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도입방안 | 75 |
| 별첨 1)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 | 76 |
| 별첨 2)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 | 82 |
| 별첨 3)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 | 89 |
| 별첨 4) 디자인사업대가의 기준(안) | 96 |

- 표 목 차 -

| | |
|--------------------------------------|----|
| <표 2-1> 용역계약서 개정(안) | 34 |
| <표 3-1> 공공디자인의 구분과 내용 요약 | 38 |
| <표 3-2> 공공디자인 예시 | 39 |
| <표 3-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예산변동 현황 | 40 |
| <표 3-4>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 인건비 산정기준 | 43 |
| <표 3-5> 디자인전문기업 인건비, 경비 등의 비율 | 44 |
| <표 3-6> 타 지식기반사업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 46 |
| <표 3-7>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적용 | 49 |
| <표 3-8> 건축사 대가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 | 50 |
| <표 3-9> 엔지니어링기술 | 51 |
| <표 3-10> 대가기준 모형 비교검토 | 59 |
| <표 3-11>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 | 63 |
| <표 3-12>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분류 | 64 |
| <표 3-13> 학술연구용역 참여자 등급 분류 | 65 |
| <표 3-14> 엔지니어링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노임단가 | 65 |
| <표 3-15>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 66 |
| <표 3-16> 기술인력 명칭 변경(안) | 67 |
| <표 3-17> 참여인력 월 노임단가 및 일 노임단가 | 67 |
| <표 3-18> 일반관리율과 이윤율 비교 | 68 |
| <표 3-19> 대가기준 구성요소 도출 | 70 |

I. 서론

제 1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등

제1절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디자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부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7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0.10. “디자인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연구”에서 디자인 용역계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과 디자인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한계로 인하여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활용률이 저조하였다.

- 디자인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민법」 도급계약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여 디자인사업자의 권리보호 미흡
 - 디자인 단계별로 산출되는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미흡
 - 불명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분쟁예방 한계
-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증대하나 디자인사업자의 대가기준 부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의 디자

인용역 발주 시 적용할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의 원가구조 등과 상이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에 의해 디자인사업 대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참여인력의 구분 및 자격요건이 디자인사업자의 인력구조와 불일치
- 퇴직급여, 법정 4대 보험 미반영된 임금단가
- 디자인사업자의 일반관리비율과 상이한 일반관리비율
- 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사 등)의 이윤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결정된 이윤율

2. 목적

-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성공적인 용역 수행
- 민간 디자인 용역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디자인 산업 발전에 일조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가기준의 수립을 통한 디자인사업자 권익 보호



제 2 절 용역 범위 및 목표

1. 용역 범위

○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출

-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의 주된 분쟁사항 연구
-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법률효과 연구
- 해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 도출된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연구

○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도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의 용역 원가계산방법 연구
- 타 사업 대가기준 연구
- 디자인 대가기준 최적 모형 도출
- 디자인 대가기준(안) 도출
- 도출된 디자인 대가기준 도입방안 연구

2. 용역 목표

○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출

○ 디자인 대가기준 도출

○ 용역 수행 결과물 활용방안 도출



3. 용역수행 결과물

-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 디자인 대가기준

4. 용역의 기대효과

- 디자인 용역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 디자인사업자의 정당한 대가 보상을 통한 디자인산업 발전
- 국가 등의 디자인사업 발주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II.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1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은 용역계약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디자인 용역 수행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디자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디자인 용역은 발주자와 디자인사업자의 상호신뢰로부터 최선의 결과가 산출되며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서면 계약서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2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연구방법

- 디자인 용역계약 실태분석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0.7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연구” 결과 검토
 - “2010 산업디자인통계” 검토
- 디자인 용역계약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분석
- 국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 미국그래픽아트협회(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 표준계

약서 연구

- 일본산업디자인협회 (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표준계약서 연구

- 쟁점 및 해결방안 도출

-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연구

제 2 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제1절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1. 디자인 용역계약의 의의

디자인 용역계약은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개발 관련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디자인 용역의 완료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관련 업무 내용에 따른 분류

발주자의 디자인 개발 관련 업무에서 특정 디자인 개발의 수행 여부에 따라 디자인 개발용역과 디자인 컨설팅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디자인 개발용역

디자인사업자가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특정 목적에 사용될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디자인 개발과정의 참여정도에 따라 전담형 디자인 개발계약과 부분참여형 디자인 개발계약으로 구분된다.

전담형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인사업자가 특정 목적에 사용될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디자인 전략수립, 디자인 콘셉트 도출, 디자인 시안 개발 및 최종 디자인 도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계약이며, 부분참여형 디자인 개발계약은 발주자가 제시한 디자인 전략과 기획 등에 따라 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만을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 디자인 컨설팅용역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특정 디자인 개발을 제외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디자인 트렌드 조사, 디자인 전략수립, 디자인 콘셉트 도출

등의 발주자의 디자인 개발 관련 업무에서 디자인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 개발 목적(분야)에 따른 분류

디자인 용역계약은 발주자의 디자인 이용목적(분야)에 따라 시각디자인 용역계약, 제품디자인 용역계약, 환경디자인 용역계약, 포장디자인 용역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시각디자인 용역계약

발주자가 의도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제품디자인 용역계약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형태가 아름답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과 제품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환경디자인 용역계약(건축디자인, 실내인테리어, 조경, 디스플레이 등)

인간의 쾌적한 삶,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 정비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기타

상기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용역계약이다.



2. 디자인 용역의 특성

(1) 발주자와 소비자의 분리

디자인 개발결과물의 소비자는 발주자가 소구하고자 하는 계층, 집단으로 발주자와 소비자가 분리(부분적으로 건축디자인, 실내인테리어디자인 등의 예와 같이 발주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음)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용역의 성공여부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결과물의 전개(Design delivery)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2) 디자인 개발결과물의 미확정

디자인 개발용역의 결과물(형태와 색상, 재료의 재질, 표현, 공간의 배치 등)은 발주자와 디자인사업자간의 계약체결 시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디자인 개발과정의 종료로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된다.

최종 디자인 개발용역 결과물의 확정은 디자인 개발용역 발주(계약)이후 디자인 전략,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아이디어 등의 도출을 통한 디자인 시안 및 최종시안에 대한 단계별 인도물에 대한 발주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3) 디자인 개발용역은 지적재산 창출과정

디자인 개발용역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디자인 개발활동 결과물은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며,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다.

(4) 권리침해의 용이성



디자인 개발 결과물은 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용이하다.

3.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1) 디자인 용역과 민법

디자인 용역계약은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일(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과정의 특정 업무)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전형계약의 일종인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¹⁾

독일과 일본도 디자인 개발계약을 주로 도급계약으로 분류하고 계약 양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계약

디자인 용역계약은 발주자와 디자인사업자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계약의 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 쌍무·유상계약

발주자는 보수지급 채무와 디자인사업자는 디자인 용역의 이행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며, 발주자는 디자인사업자의 일의 완성에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계약이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률 효과

1) 디자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디자인 용역계약은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용역을 완료할 것을 의무로 발주자에 대한 권리(보수청구권)가 확정된다.

가. 의무

디자인 개발 또는 업무를 완성할 의무 및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 의무

○ 디자인 용역의 완성 의무

디자인사업자는 적당한 시기에 용역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일(디자인 개발, 디자인 컨설팅)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디자인사업자는 용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제 3자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디자인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 의무

디자인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²⁾

디자인 용역 결과물이란 계약에서 정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 컨설팅 결과물을 의미한다.

2) 민법은 완성물 인도 의무를 “도급의 목적인 일이 유형의 것(동산, 부동산의 물건)”일 경우에는 그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히 용역의 목적물이 무형의 것(특히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인 디자인 개발 결과물)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 고지의무

디자인사업자는 발주자의 지시가 용역 결과물인 디자인에 하자를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하였을 경우 그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을 함에 있어 발주자의 요청이 건축법규에 위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디자인 개발(설계)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디자인의 하자(건축 관계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실시 불가능)에 대해서는 담보책임(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란 개발된 디자인이 하자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사업자는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디자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하자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 계약관계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개발된 디자인의 하자란 계약상 하자과 계약외적 하자과 분류할 수 있다. 계약상 하자란 계약에서 정한 규격,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의미하며, 계약외적 하자란 개발된 디자인의 실시·전개가 법적 규제 요건의 위배 또는 공학적 실현 불가능성(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등으로 인한 디자인 실시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발주자가 복수의 디자인 시안 중 선택한 디자인 시안의 대한 최종 디자인의 색상, 색, 재질 등에 대한 발주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른 클레임은 하자가 아니며 발주자의 의사표시로 수정을 요한다.³⁾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하자보수의무는 개발된 디자인을 당사자의 계약요건의 충족 또는 법적 규제요건의 충족시키는 디자인 변경으로 이행된다.

나. 권리

○ 보수청구권

디자인사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체결 시에 성립하고 디자인 용역 완성(인도)으로 확정된다.

보수의 지급(청구)시기는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도 없으면 용역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보수의 일부를 선급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사업자는 그 대금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발주자가 용역을 완성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디자인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발주자의 의무

○ 보수지급 의무

발주자는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의 결과물이 인도됨과 동시에 용역 보수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

3) 디자인 개발용역은 계약체결시점에서 계약이행 결과물인 디자인의 성상, 색, 재료의 재질 등이 확정되지 않는 무형의 창작물을 개발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특성은 완성된 목적물인 디자인에 대한 하자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 검수의무

디자인사업자가 용역 결과물을 인도한 경우 용역의 결과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의 목적물로서 승인한 다음에 수취해야 한다. 즉, 디자인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에 쫓아 완성한 용역 결과물을 지체 없이 검수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디자인사업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⁴⁾

○ 협력의무(부수적 의무)

발주자는 디자인사업자가 발주자가 의뢰한 디자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할 의무 등이 있다.

3) 계약의 해제

가. 발주자의 해제권

① 법정해제권⁵⁾

발주자는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민법은 발주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검수의무는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디자인 개발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말한다. 독일 민법은 계약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검수하지 않은 목적물의 인도는 이행의 완료로 보지 않고 있음

5)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제권⁶⁾

용역 결과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⁷⁾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비록 디자인사업자가 보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⁸⁾

발주자는 디자인사업자 일의 착수를 해태하는 때에는 이행지체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발주자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6)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법 상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은 “완성된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디자인 용역의 특성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의 하자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고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으로 당연히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유효성은 낮다.

8)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총칙)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아니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 총칙)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디자인사업자의 해제권⁹⁾

디자인사업자는 발주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 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1. 디자인 용역계약 쟁점 도출 방법

- 디자인 용역 계약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도출된 쟁점의 분석
- 디자인 용역 계약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개발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진흥원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분석
- 디자인 용역계약의 실태분석과 진흥원 표준계약서에서 표시되지 않은 쟁점사항의 분석
- 국외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분석을 통한 쟁점 비교 분석

2. 디자인 용역 계약과 용역 수행과정시의 쟁점

디자인 용역계약의 쟁점은 용역계약 체결시의 쟁점과 용역수행과정에서의 쟁점, 용역 완료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제5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계약 체결단계

- 과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
- 보수 및 보수의 지급방법 및 시기

(2) 디자인 용역 수행단계

- 발생경비의 귀속과 정산
-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 계약의 중도 해지/ 해제
- 디자인 개발과정에서의 중간 결과물의 검수 및 승인
- 디자인 용역 수행과정에서 창출된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3) 디자인 용역 완료 시점에서의 쟁점

- 용역 최종결과물의 검수 및 인수
- 발주자에게 인도된 최종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4) 개발 결과물 인도 후 쟁점

- 제3자에 대한 손해
-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3. 디자인 용역계약 쟁점 및 개선안

디자인 용역계약 쟁점과 해결방안 도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기업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0.10 개발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진흥원 표준계약서” 라고 한다.)”의 계약서 조항과 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이하 “JIDA”라고 한다)와 미국그래픽아트협회(American Institution of Graphic Art. 이하 “AIGA”라고 한다) 등을 비교하여 진흥원표준계약서의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업 내용 및 범위

① 현황

진흥원표준계약서는 제4조(디자인 개발 용역의 과업범위)에서 “디자인의 내용,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금액, 투입인력 등의 용역 이행과 관련된 과업 내용과 범위를 예시로 기재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와 AIGA의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 목적물과 일정, 디자인 보수 등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된 최종 제안서(Proposal, AIGA) 또는 디자인 상세 내역을 기재한 지시서(JIDA)를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하고 기본계약서에서는 세부내역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③ 개선안

제4조(디자인 개발 용역의 과업범위)는 삭제하고 별지로 디자인 용역 상세 내역서(용역 목적물의 정의, 용역보수의 지급방법과 시기, 개발일정(단계별 구분)과 각 단계에서의 발주자에게 전달될 산출물의 내용 등

을 기재)를 첨부하는 것이 계약서의 구성과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것이다

(2) 실비보상 경비

① 현황

실비보상 경비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출장비, 외주모델제작비, 외주조사, 외부자료 등의 경비로서 표준계약서는 갑의 요구에 의한 시제품 제작비용만 대금으로 별도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는 디자인업무계약 합의서에서 실비 발생비용을 “특별경비”로 규정하고 다음의 사례를 예시하고 사전에 견적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특별경비로서 청구하여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일정거리 이상의 출정여비
- 외주 모델 제작
- 외부 조사
- 외부자료구입
- 공업소유권 등록출연의 서면작성 등의 발주자의 의뢰에 의해 필요한 비용은 사전에 견적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청구 정산한다.

AIGA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된 현금경비와 출장비를 정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 보수(fees)와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③ 개선안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대상 경비의 범위와 정산방법 및 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직접경비의 정산원칙을 확립한다.

(3) 계약내용의 변경/추가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추가(제6조)의 효력발생조건과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원투입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계약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변경을 갑과 을의 협의사항으로 변경가능성만 제시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는 기본계약서에 ①갑의 필요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②별첨 디자인업무계약 확인서의 7 보수 조항에서 발주자에 의한 업무내용, 목표, 일정 등의 중도변경에 대해서는 보수 추가를 명시하고 있다.

AIGA는 발주자의 변경요청에 따른 결과물의 산출 소요시간 또는 가치가 변경전의 소요시간 또는 가치에 비해 일정 증가율을 기준으로 일반변경(General changes)과 중대한 변경(Substantive Changes)로 구분하고 중대한 변경일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제안서로 일정과 투입인력 등을 재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변경에 따른 투입시간 등의 증가에 대해서 디자인수행자의 표준임률로 추가청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③ 개선안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 보수가 추가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변경요청에 따른 디자이너의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는 변경에 따른

보수 추가 청구를 기재한다.

(4) 디자인 성과물 완료 전 부분 사용

표준계약서는 용역 완료 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성 용역 또는 미완성 결과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기성 용역 또는 미완성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하면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중간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수행 보수로 중간 생산물을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착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5) 일반적 손해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일반적 손해를 ① 용역 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한 디자인 결과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② 검수 후 인수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손해, ③ 재작업에 따른 손해로 구분하고 각 손해에 대하여 디자이너, 발주자, 을 또는 공동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의 기본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손해(제14조)에서 디자이너는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담하나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첨 디자인 업무계약 확인서예의 5.지적재산권 조항에서 “디자이너는 제안 내용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고 규정하고 침해한 경우 배상금액의 상한을 계약금액의 범위로 하고 있다.



AIGA 기본계약서는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책임을 9.보증과 진술(Warranties and Representation) 조항에서 ①전문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 ②발주자에게 인도한 용역결과물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③ 발주자에게 인도한 용역결과물을 구성하는 최종 구성물도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 보증, 서약하고 만약 계약서에서 규정한 디자이너의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발주자의 모든 손해, 발주자의 중과실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제외, 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규정(10.INDEMNIFICATION / LIABILITY)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용역의 수행으로 창출한 순이익(Net profit)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디자인 결과물이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용역 완료의 결과로서 인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한 중간결과물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손해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검수 후 인수한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손해의 개념도 정확하지 않으며, 갑의 관리와 지시에 따라 제작된 제작물이 갑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¹⁰⁾

따라서 표준용역계약서의 일반손해 조항은 발주자와 제3자로 하고, 발주자의 관리와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작한 디자인 제작물에 대한 재작업 비용은 당연히 발주자가 디자이너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할 보수이므로 동 조항은 폐기 또는 개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금액 또는 디자인 용역으로 얻은 이익(Net Profit)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10) 민법은 발주자의 지시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를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그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6) 부당한 용역계약 취소 금지

① 현황

표준용역계약서는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계약 취소·변경 또는 용역 결과물의 수령 거부를 방지하고자 부당한 용역계약 취소금지와 용역결과물의 수령 거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의 기본계약서는 발주자의 계약해제조항으로 제13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에서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제1호)하고 일방적 계약해제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로 인하여 디자이너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IGA기본계약조건 11.기간과 종료(Term and Termination) 11.2에서 계약 일방의 유효한 즉각적인 통지에 의해 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11.3에서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의 경우 디자이너는 종료의 날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보상받는 것과 보상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표준계약서의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조항은 민법에서 정한 당사자의 계약해제의 권리를 부인하는 조항이므로 폐기하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방어한다.

(7) 부당한 계약금액 감액 금지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와 AIGA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금액 감액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계약 금액의 감액은 계약의 변경에서 규정하고 동 조항 폐기한다.

동 조항이 한국의 디자인 용역의 수행과정 중에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라는 것은 이해되나 계약 조항의 구성은 계약조항의 변경과 그 효과로 규정되어야 한다.

(8) 통지의 방법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디자이너가 발주자로부터 구두상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통지에 의한 디자이너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JIDA, AIGA

The logo for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features the lowercase letters 'kidp' in a stylized, rounded font. The 'i' and 'd' are connected, and the 'k' and 'p' are also connected. The color is a light red or pink.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JIDA의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의 구두지시에 대한 디자이너의 보완 서류 징구 및 보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연히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발주자의 구두지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디자이너에게 서면 보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AIGA기본계약조건 12.일반사항(General)에서 발주자는 계약내용의 변경과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지시사항은 서면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구두지시에 대한 디자이너의 서면 보완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개선안

표준계약서 제13조(구두상의 통지, 지시 등) 조항은 발주자의 구두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디자이너의 동 지시에 의한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디자이너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방어적 조항이나 동 조항은 폐기하고 변경 및 통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신설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수행과정에서의 지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9)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배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배분 조항 없다. 일본은 디자인 개발계약이 도급계약(일본 계약유형 명칭: 請負契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디자인 용역 보수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고 디자이너는 개발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 발주자의 목적물 이용에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결과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첨 디자인 업무계약 확인서 5. 지적재산권에서 “발주자에 의해 채택된 안과 그것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 또는 지불 완료 후에 발주자에 양도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AIGA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조항은 없다.

독일공업디자이너연맹(VDID)과 독일디자이너연맹(DDV)이 1995년 5월 발표한 제품디자인 “계약과 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최종 개발 디자인 실시권은 대가 지불 후 발주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는 제품판매수량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③ 개선안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에서 개발에 따른 수익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즉 시각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전개(사용)로 창출되는 수익의 개념과 수익 배분의 기초가 되는 수익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위탁개발로 인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도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디자인 용역계약의 실무에서 통용되지 않는 동 조항을 폐기한다.

(10) 용역의 완료 검사 및 인수

① 현황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준계약서는 최종성과물의 완료검사 및 검수기한과 검수 후 불합격에 대한 재검수를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기본계약서는 디자이너의 계약에 관한 업무가 완성한 때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업무가 완료의 통지와 검수를 요청하고 발주자는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물을 인수하고, 불합격한 때에는 디자이너는 발주자가 지정한 시점까지 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AIGA기본계약조건 4.4 검수와 승인(Testing and Acceptance)에서 발주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용역 수행의 각 단계에서 발주자에게 인도된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검수하고 서면으로 용역 제안서에서 정해진 특정 규격에 대한 불합격 사항, 또는 인도된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의 반대, 수정, 변화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통지는 서면 통지의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러한 통지가 없다면 인도된 결과물은 승인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표준계약서는 최종 인도물의 검수요청과 발주자의 검수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 수행 단계별로 디자이너에 의해 제시되는 중간 결과물(디자인 콘셉트 Design concept, 디자인 시안 design sketches 등)의 검수 및 승인을 신설하여 최종 디자인 완성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서의 문구 오류는 수정한다.



(11) 계약 종료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통지의무, 해제·해지로 인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기본계약서는 해제를 디자이너의 책임으로 인한 해제(제10조 (유상해제)), 디자이너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제11조(무상해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해제(제13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로 구분하고 “을의 요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위반한 때를 유상해제의 사유로 하고 있다. 을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용역 업무 중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IGA기본계약조건에서 계약의 종료 사유로 계약 일방의 유효한 즉각적인 통지(서면),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방 당사자의 지급불능, 파산신청, 채권자 압류, 계약 위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치유되지 않는 중요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을 계약종료의 사유로 규정하고 발주자는 계약 종료시점까지 디자이너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수행을 위한 선급금, 총 용역보수 중 용역수행비율에 의해 계산한 용역보수 및 발생된 비용 및 추가비용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쟁점은 해제·해지 사유와 해지시의 법률적 책임(손해보상 의무, 보수지급 의무)로서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①계약 당사자 일방의 통보 또는 합의 ②계약 당사자 일방의 용역이행능력의 불능 또는 일정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는 중요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률적 효과(손해배상 책임)를 규정하면 된다. 표준계약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표시와 일방의 계약 이행능력의 불능에 대한 표시만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개정하고, 발주자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우리 민법은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디자이너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디자이너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12) 지체상금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디자이너의 이행지체에 대한 벌칙과 지체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보수지체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JIDA, AIGA

JIDA는 약정에 의한 보수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율 8.25%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계산할 수 있고, 천재 등의 사유로 지급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조 지불 연체이자) 디자인 업무계약합의서 5.지적재산권 조항에서 대금의 완불 후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수지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완료일 이후 업무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일당 1000분의 2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AIGA기본계약조건 3.4 청구서(Invoices)에서 발주자의 대금 지불 지연

에 대한 연간 18%(주법이 허용하면 증가 가능)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불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 이행지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에서 디자이너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표시하고 있다.

③ 개선안

표준용역계약서는 일방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의 보수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을 신설한다.

(13) 지적재산권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원칙적으로 공유, 갑의 소유로 하는 경우 을의 개작권 인정, 을의 소유일 경우 갑에게 사용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② JIDA, AIGA

JIDA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기본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디자인업무계약합의서 5.지적재산권 조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지적재산권

디자이너는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침해한 경우의 배상금액의 상한은 계약금액 범위로 한다.

디자이너의 제안에 포함된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받을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속하고 발주자에 의해 채택된 안과 그것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 또는 지불이 완료 후에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발주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등록에 관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디자이너는 계약업무의 수행에서 공업소유권에 상당하는 내용을 창출한 경우는 발주자에게 그 취지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발주자가 디자이너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업소유권에 상당하는 내용의 등록에 대해서는 승낙을 필요로 하고, 창작자로서의 디자이너 측 담당자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JIDA는 지적재산권과 공업소유권을 발주자가 승인하고 인수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최종생산물 이외의 용역 승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으로 구별하고 발주자가 디자인 개발결과물로 승인하고 인수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 귀속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용역 수행 중 디자이너가 창출한 지적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양도”로 표시하는 것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이 원창작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인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양도”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GA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 최종 디자인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디자이너에 의해 창출된 시안(Preliminary works)과 계약에서 정한 각 단계의 발주자에게 계약상 정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 또는 검수 받은 결과물(Deliverables),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최종작품(Final Arts)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디자이너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시안, 중간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최종 작품을 발주자가 이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개선안

디자인 용역계약의 목적물은 디자인 분야별로 상이하고 디자인 결과물에 의해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도 상이하다. 즉 시각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개발용역의 결과물에 의해 창출되는 주된 지적재산권은 각각 저작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저작권이다. 따라서 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지적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지적재산권도 저작자 표시와 원저작자의 사용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14) 분쟁조정절차

① 현황

표준계약서는 분쟁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JIDA, AIGA

JIDA 계약서에 발주자와 디자이너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자의 협의에 하여 결정한 중재자에게 의뢰하여 그 중재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AIGA 기본계약조건 12.5 관할 법과 분쟁해결에서 계약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을 통해 조정 신청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③ 개선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계약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통한 해결하여 해결 규정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소 관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4.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안) (별첨 1,2,3)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는 진흥원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 용역계약 쟁점에서 검토한 문제점의 개선안을 규정으로 도출하였다.

(1) 디자인 표준계약서 도출

도출된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1종(별첨1), 시각디자인 1종(별첨2), 웹디자인 1종(별첨3), 총 3종이다.

환경디자인 분야의 건축디자인과 실내인테리어디자인은 오랜 거래관행으로 확립된 표준용역계약서가 있어 표준계약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개정된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특징

- 민법 도급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
- 계약의 해석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계약서 해석의 분쟁 예방
- 국제 디자인협회의 표준 계약조항을 반영
- 디자인 분야별로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산출되는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
-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설치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해결을 계약조항에 반영

(3)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구성

디자인 용역계약서는 계약일반사항을 규정한 표준계약서와 디자인용역 목적물, 과업수행일정과 단계별 산출물 등을 기재한 업무제안서 및 기타 계약 당사자의 합의문건으로 구성된다.



(4) 쟁점별 개정(안) 비교

디자인 용역계약 쟁점별로 개선안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2-1> 용역계약서 개정안(제품 디자인 계약서 사례)

| 진흥원 표준계약서 | 제품 디자인 표준계약서 |
|-------------------------|---|
| 제1조(목적) | 제1조(계약의 목적) 조문 수정, 계약의 목적 상호신뢰 확보, 분쟁 예방 기재 |
| 제2조(사용언어) | 삭제 |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수정 전면 삭제 후 계약의 해석에 기준이 되는 용어 정의 신설 |
| 제4조(디자인 개발 용역의 범위) | 삭제 |
| 제5조(대금지급) | 제3조(보수) 조문 수정 및 실비변상비용 신설 제4조(보수의 지급) 보수의 지급 시기를 용역 수행단계별로 구분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보수 지급지연 이자 신설 |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추가)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추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보수 조항 신설 |
| 제7조(디자인 성과물 완료 전 부분 사용) | 삭제 |
| 제1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검수기간 내에 불합격 통지가 없는 경우 인수 간주조항 신설 |

| 진흥원 표준계약서 | 제품 디자인 표준계약서 |
|------------------------|---|
|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조항 신설 저작권법 준용조항 전면 개폐 |
| 제9조(일반적 손해) |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조목 개정 디자인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신설 |
| 제10조(부당한 용역계약 취소 금지) | 삭제 |
| 제11조(부당한 계약금액 감액 금지) | 제14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으로 조항 흡수 및 삭제 |
|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문항 수정 |
| 제13조(구두상의 통지, 지시 등) | 삭제 제19조(통지)로 조항 흡수 |
| 제14조(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 삭제 |
| 제15조(비밀의 유지) | 제11조(비밀의 유지) 문안 수정 |
| 제16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발주자의 자료제공 의무 신설 |
| 제1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 제7조로 변경 |
| 제18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 제13조(계약의 해제) 조문 수정 |
| - | 제14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변경) 신설 일방적 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및 범위 규정 |
| 제19조(지체상금) | 제15조(지체상금) |



| 진흥원 표준계약서 | 제품 디자인 표준계약서 |
|-----------|------------------------------------|
| - | 제16조(을의 배상책임) 신설 배상금액의 범위 규정 |
| - | 제17조(불가항력) 신설 |
| - | 제 18조(분쟁의 해결) 신설 |
| - | 제19조(통지) 신설 통지의 방법 및 효력 |
| - | 제20조(상호합의) 신설 계약조항의 해석 권한 등 |
| 제21조(기타) | 제21(기타) 존속 |

제3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1.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디자인 용역계약의 계약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과 더불어 표준계약서가 지식경제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1항 제4호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제5호에 따라 고시(또는 공고)의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제1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제정필요성

제1절 공공디자인의 의의 등

1. 공공디자인의 의의

공공디자인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 등이 “건물, 도로,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도시전체 환경을 하나의 건축물로 생각하고 구조적, 기능적, 미적으로 완성미를 갖춘 환경을 만드는 것” 11)으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12)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공공디자인의 분류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공공디자인을 도시환경 기반시설,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공간디자인,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디자인, 공공용품과 정보매체와 상징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보디자인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3)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도로시설물 등의 도시구조물, 도로부속 시설물 등의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과 기타로 공공디자인을 구분하고 있다.

11) 이시화, <공공디자인에서의 시내버스 INFO GRAPHIC연구>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2012.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공공디자인의 구분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3-1> 공간디자인의 구분과 내용 요약(한국공공디자인학회)

| 구 분 | | | 내 용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공공공간 디자인 | 도시환경 | 야외 공공공간 | 공원, 운동장, 놀이터 등 |
| | | 기반시설공간 |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등 |
| |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 행정공간 | 국가 등의 청사, 교도소 등 |
| | | 문화/복지공간 | 시민회관, 체육관, 공연장 등 |
| | | 역사/시설공간 |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철역 등 |
| 교육/연구공간 | 학교, 훈련원, 연구소 등 | | |
| 공공시설 디자인 | 교통시설 | 보행시설물 | 보행신호등, 펜스, 가드레일 등 |
| | | 운송시설물 |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억제물 등 |
| | 편의시설 | 휴게시설물 | 벤치, 의자 등 |
| | | 위생시설물 | 휴지통, 음수대, 화장실 등 |
| | | 판매시설물 | 매점, 무인 키오스크 등 |
| | 공급시설 | 관리시설물 | 하수처리장, 관계·배수 시설 등 |
| | | 정보시설물 | 공중전화, 풍향계, 관광안내 시설 등 |
| | | 행정시설물 | 각종 집기와 도구, 집기, 표찰 등 |
| | 공공정보 디자인 | 정보매체 | 지시유도 |
| 광고홍보 | | |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등 |
| 상징매체 | | 행정기능 |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등 |
| | | 유통기능 | 여권, 교통카드, 채권 등 |
| | | 환경연출 |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공간, 시설물, 이미지의 3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별로 공간디자인은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및 실내환경, 시설물디자인은 편의시설물, 보행 및 운송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행정시설물, 이미지디자인은 정보매체, 상징매체, 환경연출,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등을 세부 구성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 3-2> 공공디자인 예시(2011산업디자인통계)

| 범주 보기 | | 세부내용 |
|-------|-----------------|---|
| 공간 | 도시 기반시설 |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
| | 건축 및 실내환경 |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
| 시설물 | 보행 및 운송 시설물 | 보행신호등, 펜스, 방음벽,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보행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
| | 편의시설물 | 벤치, 의자, 대피소,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장,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
| | 관리시설물 |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
| | 정보시설물 |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운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
| | 행정시설물 |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
| 이미지 | 정보매체 |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등 |
| | 상징매체 | 국가 및 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
| | 환경연출 |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등 |
| | 도시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

3. 공공디자인의 발주현황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라 실시한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결과 201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예산총액은 342,246백만원이고,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디자인 발주방법은 디자인과 제작(시공)이 일괄 발주된 비율이 89.08%로 확인되었다.

산업디자인통계가 발표된 2006년, 2008년,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부서의 예산과 전 조사 대비 예산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표3-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예산변동 현황

| 구 분 | 2006 | 2008 | 2010 |
|-------|-----------|------------|------------|
| 예산총액 | 66,590백만원 | 223,000백만원 | 290,846백만원 |
| 증(감)율 | - | 234.8% | 30.4% |

*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의 예산총합으로 산출



제2절 공공디자인의 대가기준의 필요성

1. 현행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1) 공공디자인의 분류와 대가기준의 적용

공공디자인을 구성하는 공공공간(도시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환경), 공공시설물(보행 및 운송시설물, 편의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행정시설물), 공공이미지(정보매체, 상징매체, 환경연출, 도시마스터 플랜/가이드라인) 분야 중 공공디자인 창작에 대한 대가기준(디자인 창작대가 산출의 타당성 여부 불문)을 비교적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공간디자인의 도시기반시설계(系)와 건축 및 실내환경계(系)의 건축물과 교량 등이다.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디자인의 디자인대가를 산정하고, 도시기반시설계(系)의 터널, 도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건축물과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시설물디자인과 공공이미지 분야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원가계산기준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라 디자인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2)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으로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개요

- ① 근거법령: 「국가계약법」
- ② 적용범위: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③ 대가 산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정

- 인건비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참여인력별 기준단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경비

용역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의 5%

-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

④ 적용대상 공공디자인

공공건축, 기반시설물, 시설물 이외의 공공디자인

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문제점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한 공공디자인 대가 산정은 다음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디자인 대가 산정기준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 참여인력의 구분요건과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은 참여인력의 구분과 기술인력별 인건비(노무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3-4>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 인건비 산정기준(회계예규 별표5. 수정)

| 구분 | 인건비 단가 | 자격요건 | 수행업무 |
|-------|--------------|-----------|-------------------------|
|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 대학 부교수 수준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 |
| 연구원 | 월 2,235,867원 | 대학 조교수 수준 | 용역수행 |
|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 조교 수준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업무 |
| 보조원 | 월 1,120,991원 | |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 |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자격요건은 기능보유 정도를 의미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의 대가 산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참여인력의 구분과 수행업무를 대학의 교원 직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인력의 구분과 수행업무는 다음의 문제로 공공디자인 대가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인력의 구분이 디자인기업의 일반적 구분체계와 상이

일반적으로 디자인기업의 직급체계는 사원(연구원), 대리(주임연구원), 과장(선임연구원), 차장(수석연구원) 등으로 분류

○ 자격요건의 애매

디자인사업자의 기술인력의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관련 자격 보유와 학력 또는 경력으로 구분

(2) 경비의 비목이 디자인 개발업무의 직접경비의 비목과 불일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여비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 ②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 ③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⑤ 회의비 :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의 외부 임차 등의 비용
-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⑧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경비의 비목은 디자인 용역 수행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의 비목과 상이하여 디자인 개발 직접경비의 작성과 산출에 오류와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타당성과 형평성

1)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각각 5%와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5호에 의해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는 “2011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신청기업 50개 중 총매출액 대비 디자인 매출 비율이 90%이상인 18개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5> 디자인전문기업 인건비, 경비 등의 비율

| 구 분 | 구 성 비 율 | 비 고 |
|-------|---------|------------------|
| 인 건 비 | 26% | 노무비+ 복리후생비+퇴직급여 |
| 재 료 비 | 10% | 제조원가명세서의 재료비 |
| 경 비 | 54% |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경비 |
| 영업이익 | 10% | 매출액- 매출원가 -경비 |
| 합 계 | 100% | |

* 구성비율은 매출액(대가) 대비 비율

디자인전문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학술용역원가의 원가계산 구조를 감안한) 디자인전문기업의 인건비, 재료비와 직접경비 합계금액 대비 간접경비(일반관리비)의 비율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일반관리비율 5% 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
- 디자인 전문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이윤율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 대비 이윤의 비율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이윤율은 실제 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

2) 타 지식기반사업의 경비율, 이윤율과의 형평성

타 지식기반사업(건축사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120%, 이윤율(기술료 또는 창작대가)은 직접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의 20~40%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비하여 높다.

<표 3-6> 타 지식기반사업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 구 분 | 경비율 | 이윤율 |
|-------------|-----------------|---------------------|
| 건축사대가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 | “ |
| 소프트웨어대가기준 | “ | “(25%) |

* 경비율과 이윤율의 산정에서 직접경비를 제외한 것은 직접경비는 실비변상 성질의 경비로 대가기준 산정으로 보전됨으로 제경비와 이윤율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

3.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필요성

-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합리적 대가기준의 수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국가 브랜드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공적 영역의 총체적인 문화 활동인 공공디자인은 대한

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등의 공공디자인 예산과 집행액은 해가 갈수록 증대(표3-3참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산업디자인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감안하면 공공디자인의 예산과 집행액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공공디자인 분야별 대가기준의 확립을 통한 국가 등의 예산 및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사업자의 창작대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제고하고 디자인산업을 발전에 기여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디자인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의 육성·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과 “타 산업 대비 디자인산업 취약부분”에 대한 조사에 각각 ‘저임금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55.8%)’과 ‘전문 인력 양성(52.7%)’

- 국가 등과 디자인사업자 간의 합리적 디자인 창작대가 보상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은 민간 디자인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억제하여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

국가 등의 조달 시장 가격은 민간 시장의 가격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시장의 합리적 대가기준에 의한 가격은 민간 디자인 시장에서 일정 정도 가격의 지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 대가기준의 수립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염가 구매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도출

제1절 국가 등의 용역보수 산출모형

1. 국가계약법령 검토

「국가계약법」은 물품의 제조·구매, 건설, 용역 등의 예정가격 결정과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용역보고서는 용역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한정하여 국가계약법을 검토한다.

(1) 국가계약법의 예정가격 산정

1) 예정가격 산정의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2) 예정가격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

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으로 결정한다.

3) 예정가격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① 거래실례가격

적절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 내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③ 실적공사비

④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2)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1)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성과 원가계산방법

디자인 개발용역은 신규 창작(개발)과, 발주자의 특정 목적을 충족하는 특수 규격(요구)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용역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방법 또는 유사 디자인 용역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해 산출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에 의한 공공디자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일반원칙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의 예정가격(대가)의 결정방법은 공공디자인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이 있다면 법령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해 산출하고 대가기준이 없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건축사대가기준 등과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준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공공디자인의 대가기준은

공공디자인 세부내역에 따라 다른 법령 대가기준(건축사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세부내역의 대상과 업무범위가 다른 법령 대가기준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세부내역별 적용 대가기준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② 다른 사업 대가기준의 적용

공공디자인 세부내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업무범위(사업)로 정한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의 건축 및 실내환경은 대부분 건축사의 업무범위이고, 도시기반시설 디자인과 공공이미지의 도시 마스터플랜 등은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축사의 업무이다.

상기 건축 및 실내환경을 제외한 공공디자인의 대가 산정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3-7>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적용

| 범 주 | | 대가기준 | 비고 | |
|-----|-----------|-------------------|------------|----|
| 공간 | 건축및실내환경 | 마을회관 등 | 건축사 | 환경 |
| | 도시기반시설 | 터널, 교량, 공원, 운동장 등 | 건축사, 엔지니어링 | 환경 |
| 시설물 | 보행및운송 등 | 보행신호등 | 학술연구용역 | 제품 |
| 이미지 | 정보매체 등 | 이정표, 상징시스템 등 | 학술연구용역 | 시각 |
| | 도시마스터플랜 등 | 도시계획 | 건축사, 엔지니어링 | 환경 |

<표3-8> 건축사 대가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건축사대가기준 별표 3)

| 종 별 | 건축물의 종류 |
|-------------|--|
| 1 종 (단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 2 종 (보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 3 종 (복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

<표3-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 선박부문 | 조선 | | |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 |
| 금속부문 | 금속 | | |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 화학부문 | 화학 | | |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방지 | |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지질 | 12) 측량·지적 |
| | 13) 품질시험 | | | |
| 설비부문 | 설비 | | |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폐기물처리 |
| | 5) 자연·토양환경 | | |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 관리 | | 2) 비파괴검사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기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정의) 별표 1) 산업부문에 제품·포장디자인이 산업부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무비 단가의 통계에서는 제품·포장 디자인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품과 포장디자인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 없다.

3)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

상기 건축디자인, 도시기반시설 디자인 이외의 공공디자인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을 준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견적가액에 의한 대가기준 산정

(3)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으로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부적합성

“Ⅲ.의 제1장 제2절 2 참조(Page 42~45)”

제2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모형 도출

1. 일반적 용역대가(보수) 결정

용역대가는 용역수행 인력의 인건비, 용역수행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직접경비,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수행자의 행정운동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와 목표이윤으로 구성된다.

(1) 인건비

인건비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보수 등의 총액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법정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text{인건비} \times \text{투입시간} \div \text{총근무 가능시간}(\text{표준임률})$ 으로 산정된다.

(2)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당해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된 경비(당해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비)로 여비, 저작권사용료, 모형제작비, 도면작성비, 보증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3) 간접경비

당해 용역 수행에 직접 대응되지는 않으나 용역수행자의 사업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용역수행자 이외의 임직원 등의 인건비,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와 비품비, 전산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4) 목표이윤

목표이윤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을 통하여 자본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이윤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안) 도출

(1)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모형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모형은 실비정액가산모형, 제작비요율모형, 지수가중치모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방식의 내용과 적용사례, 장·단점 등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 모형

① 의의

실비정액가산 모형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직접비(실비)와 「통계법」에 의한 실태조사로 결정된 일정율의 경비율과 이윤율로 계산된 경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대가 구성요소

○ 인건비

- 투입된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사전에 결정된 노임단가로 산출
- 투입된 인원수는 사전에 결정된 표준품셈 또는 견적에 의해 산출

○ 직접경비

-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 모형제작비, 제3자의 저작권 사용료, 도서인쇄비 등

○ 경비

- 인건비의 일정률 또는 인건비와 직접경비의 일정률로 산출
- 적용될 율은 기업실태조사통계에 의해 사전에 결정

○ 이윤

- 인건비와 경비의 일정률 또는 인건비와 경비(직접경비+경비)의 일정률로 산출
- 적용될 율은 기업실태조사통계에 의해 사전에 결정

③ 적용례 :

건설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대가기준, 학술
용역원가 원가계산 등

④ 장단점

○ 장점

-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 산정 원칙
- 일반적 용역대가 산정모형에 부합

○ 단점

- 공정에 대한 대표적인 표준 공정의 설정과 투입 노무량의 측정이 어려움
- 매년 표준 노임단가의 조정을 위한 통계조사 필요
- 경비율과 이윤율이 용역 수행자의 경비율과 이윤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보상율로 고정됨

2) 사업비요율 모형

① 개념

사업비요율 모형은 개발된 디자인을 적용할 대상(건축물, 시설물, 매체 등)의 사업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사업비요율 모형은 적용할 대상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작업의 복잡도

가 증가하고 또한 용역 수행자의 인건비 등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② 대가구성요소

제작비요율 모형은 대가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적용례

건축사대가기준의 건축설계업무 대가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 부문, 통신부문, 산업플랜트부문의 대가 산정

④ 장·단점

○ 장점

대가 산정이 객관적(검증가능)이고 간이하게 산출

○ 단점

사업비 규모가 용역 수행의 복잡도와 질을 반영하지 못함

3) 지수가중치 모형

① 개념

지수가중치 모형은 업무수행절차와 내용에 따라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업무의 내용에 따른 난이도와 가중치로 산정된 점수에 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개발원가를 산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거나 수행 업무의 내용과 수행의 난이도에 의해 산정된 점수(지수)에 점수(지수)당 단가로 대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② 대가구성요소

○ 개발원가

- 개발원가는 사전에 결정된 업무단계별 지수에 의해 산정된 점수에 점수당 원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 업무수행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감안한 점수의 합계는 투입인원수와 작업시간을 정확하게 반영 가정

○ 직접경비

용역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이윤

인건비의 일정율로 산출

③ 적용례

소프트웨어대가기준의 정보전략계획수립비와 소프트웨어개발비

④ 장·단점

○ 장점

객관적(검증가능)

○ 단점

- 표준화된 업무절차 수립 어려움
- 업무내용별 가중치 결정 어려움
- 보정계수 결정요소의 결정 어려움

(2) 공공디자인 최적 대가기준 모형

1)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수립의 원칙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은 다음의 원칙으로 수립한다.

-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하는 원가계산 방법에 부합
-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자의 원가 및 창작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 대가기준 수립과 유지관리 효율적

2) 대가기준 모형의 비교 검토

대가기준 모형의 모형설계, 기본가정, 구성요소 등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3-10> 대가기준 모형 비교검토

| 내역 | 실비정액가산 | 제작비요율 | 지수가중치 |
|------------|---|--|--|
| 모형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표준 업무 절차 수립 업무별 표준공수 결정 표준노임단가 결정 표준경비율 결정 표준이윤율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비와 용역원가의 비례관계 조사 제작비 구간별 대가율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표준 업무절차 수립 업무단계별 기능점수 구성요소 및 가중치 요소 결정 구성요소 및 가중치 결정 |
| 기본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율은 인건비와 직접경비에 비례 이윤은 인건비 등과 비례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는 제작비 비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점수에 계산된 개발원가는 개발인력 인건비와 경비합계액과 동일 |
| 대가 구성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직접경비 경비 이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
| 적합 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및 구조물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개발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임단가와 경비율, 이윤율이 적정하면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방법에 가장 부합 일반적 용역보수 산정 원칙과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산정 간편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산정 간편함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임단가, 경비율, 이윤율이 시장 지배적 공급자와 상이할 수 있음 매년 각 요소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비가 용역 수행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보수율이 대가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요소와 가중치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움 용역수행자의 이윤이 과대 계상될 수 있음 매년 점수 조정 |
| 국가계약법 부합정도 | 높음 | 낮음 | 보통 |
| 도입 편의성 | 높음 | 보통 | 낮음 |



3) 공공디자인 최적 대가기준(안)

공공디자인의 대가기준은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방법과 부합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고 모델의 수립 및 유지관리의 편이성(시간 및 비용 대비 효익이 가장 높은)이 높은 실비정액가산 모형이 최적이다.

제4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안)

1. 대가 산정방법

(1) 대가 산정 구성요소의 쟁점

1) 인건비

① 인건비 계산방법

인건비는 건축공사 등의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계산방법과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용역수행 인력의 참여(시간기준time-basis 또는 hourly basis)에 따른 인건비 계산방법이 있다.

○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계산방법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계산방법은 건축공사,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대표적인 공법을 사용한 표준적인 노무자의 투입량 측정을 통한 표준품셈 결정과 노무비 표준단가의 조사 및 결정, 그리고 표준품셈을 통하여 산출된 공수에 따른 인원수와 시간에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한다.

○ 인력참여도에 의한 인건비 계산방법

용역수행 인력의 참여도 기준은 학술연구용역과 같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표준품셈을 산출하기 어려운 지식기반용역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사·결정된 기술등급별 노무비 단가에 투입노무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한다.

디자인 개발용역은 지식기반 창조산업으로 디자인 분야(공간, 시설물, 이미지)별 세부내역(건축 및 실내환경, 보행 및 운송시설물 디자인

등)별로 표준적인 디자이너에 의한 표준적인 공법을 사용하여 투입될 노동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력참여도에 의한 인건비 계산방법이 디자인용역의 인건비 산정방법으로 타당하며,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관리규정”도 인력참여도에 의한 인건비 계산방법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다.

②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기술수준별로 책정된 단가로서 인건비 산정을 위한 노임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별 인력 구분과 임금 실태조사를 통한 등급별 표준단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인력구분

디자이너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디자인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또는 디자인 관련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시각디자인 2종(기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3종(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웹디자인 1종(기능사), 컬러리스트 2종(기사, 기능사)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술·기능분야 | | | | | 서비스분야 |
|---------------|-------|---------|-----|-----------|------|-------------------|-------|
|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단일등급 |
| 문화예술 디자인 등 | 디자인 | | | 시각 | 시각 | | |
| | | | | | | 웹디자인 | |
| | | 제품 | | 제품 | 제품 | | |
| | | | | | | 제품응용 모델링 | |
| | | | | 컬러 리스트 | | 컬러 리스트 | |
| | | | | | |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 |
| 섬유·의복 | 섬유 | | | 섬유 | | | |
| | 의복 | | | 패션 | | | |
| 전기·전자 | | | | | 전자카드 | | |
| 정보통신 | | | | | | 게임그래픽 전문가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정 작성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술등급을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술계는 5등급(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숙련기술계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별 국가자격증 또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3-12>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분류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기술사 |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기술자 | 1) 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10년 이상 2)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13년 이상 | 1) 박사학위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2)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9년 이상 3)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 12년 이상 4)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 15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1) 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7년 이상 2)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10년 이상 |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6년 이상 3)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 9년 이상 4)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 12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1) 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4년 이상 2)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7년 이상 | 1)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2)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 6년 이상 3)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 9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1) 기사자격 소지자 3)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 3년 이상 |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고급숙련 기술자 | 1) 기능장 자격 소지자 2)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경력 4년 이상 3) 기능사자격 소지자, 경력 7년 이상 4) 기능사보자격 소지자, 경력 10년 이상 | 1)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 7년 이상 |
| 중급숙련 기술자 | 1)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2) 기능사자격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3) 기능사보자격 소지자, 경력 5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 3년 이상 |
| 초급숙련 기술자 | ① 기능사자격 소지자 ② 기능사보자격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 1년 이상 |

*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규칙」 별지2 수정,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는 각각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된 학위” 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기술등급을 대학교원 체계와 업무 수행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3-13> 학술연구용역 참여자 등급 분류

| 구분 | 자격요건 | 업무 |
|-------|----------------|------------------------|
| 책임연구원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 용역수행의 지휘·감독하여 결론 도출 |
| 연구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 책임연구원을 보조 |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 |
| 보조원 | -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 |

○ 노무비단가

노무비 단가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조사기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통계법」에 따라 실시한 임금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2012년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3-14> 노임단가

(단위: 원)

| 구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 |
|---------|-------------|------------|-------------|------------|
| | 노임단가 | 연 환산 | 노임단가 | 연 환산 |
| 기술사 | 330,109 | 87,148,776 | 369,995 | 97,678,680 |
| 특급기술자 | 258,612 | 68,273,568 | 330,973 | 87,376,872 |
| 고급기술자 | 205,855 | 54,345,720 | 251,772 | 66,467,808 |
| 중급기술자 | 181,472 | 47,908,608 | 208,943 | 55,160,952 |
| 초급기술자 | 133,629 | 35,278,056 | 162,862 | 42,995,568 |
| 고급숙련기술자 | 145,353 | 38,374,776 | 138,613 | 36,593,832 |
| 중급숙련기술자 | 136,981 | 35,997,192 | 107,288 | 28,324,032 |
| 초급숙련기술자 | 115,960 | 30,613,440 | 93,127 | 24,585,528 |

- * 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4대 보험과 퇴직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출. 제시된 노임단가는 건설 및 기타 부문 노임단가임
- ②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임금실태조사 결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임
- ③ 연 환산액은 노임단가×22(월평균 근속일수)×12개월로 산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최초 고시하기 위하여 조사한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학술연구용역 참여인력의 기준단가와 연환산액은 다음과 같다.

<표3-15>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단위: 원)

| 등 급 | 월 임금 | 환산 보정 | | |
|-------|-----------|------------|------------|---------|
| | | 연 환산*1 | 연 환산*2 | 일 환산*3 |
| 책임연구원 | 2,915,894 | 69,981,456 | 82,628,854 | 312,988 |
| 연구원 | 2,235,867 | 53,660,808 | 63,358,657 | 239,994 |
| 연구보조원 | 1,494,604 | 35,870,496 | 42,353,191 | 160,428 |
| 보조원 | 1,120,991 | 26,903,784 | 31,765,970 | 120,325 |

- * ① 기준단가 월 임금은 50% 참여율 기준. 참여율이 변경되면 기준단가 조정
- ② 연 환산보정*1: 월 임금×2(참여율 100%)×12 개월로 계산
- ③ 연 환산보정*2: 연환산보정*1+퇴직급여총당금(연환산보정*1/12)+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연환산보정*1×8.99%(고용+산재+국민연금+의료보험률))
- ④ 일 환산단가*3: (연환산액*2/12)÷22(근속일수)

③ 디자인용역 인건비 산정방법 도출

○ 인력구분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타 사업의 기술인력 등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통합하여 4단계로 구

분하고 구분명칭은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표시한다.

<표3-16> 기술인력 명칭 변경(안)

| 인력구분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 학술연구용역 | 비고 |
|-------|------------|--------|---------------------------|
| 수석연구원 | 특급기술자, 기술사 | 책임연구원 | 자격요건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자격기준과 동일 |
| 선임연구원 | 고급기술자 | 연구원 | |
| 주임연구원 | 중급기술자 | 연구보조원 | |
| 연구원 | 초급기술자 | 보조원 | |

○ 인력별 노무비단가

인력별 노무비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의 구분별 단가를 용역참여율 100%와 퇴직급여(1개월 급여), 퇴직급여를 제외한 연간급여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8.99%를 가산하여 산출한 월간급여 및 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표 3-16> 참여인력 월 노임단가 및 일 노임단가

(단위: 원)

| 인력구분 | 연봉 기준단가 | 월 기준단가 | 일 기준단가 |
|-------|------------|-----------|---------|
| 수석연구원 | 82,628,854 | 6,885,737 | 312,988 |
| 선임연구원 | 63,358,657 | 5,279,888 | 239,994 |
| 주임연구원 | 42,353,191 | 3,529,432 | 160,428 |
| 연구원 | 31,765,970 | 2,647,164 | 120,325 |

매년 인건비 조정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2)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디자인개발용역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제 3자의 저작권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모형(Mock-up) 제작비,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일반관리비

① 정의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디자인 기업의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관리부문의 인건비 배부액,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② 일반관리비(제경비)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 등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경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일반관리비율(제경비)율은 학술용역원가 원가계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적용, 타 사업 대가기준의 경비율 적용, 「통계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적용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17> 일반관리비(제경비)율과 이윤율

| 구분 | 학술연구용역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 소프트웨어대가기준* |
|------------|-----------|-----------|------------|
| 일반관리비율 | 5% | 110% | - |
| 일반관리비 산출기준 | 인건비+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개발원가 |
| 이윤율 | 10% | 20%~40% | 25% |
| 이윤 산출기준 | 직접비+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제경비 | 개발원가 |

* 소프트웨어개발비를 기능점수방식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준용

③ 일반관리비율의 결정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는 다른 법령에 대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

우 그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제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로 일반관리비의 발생 가정(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에 비례하여 증가)과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이 디자인기업과 상이하고 그 기준과 적용률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낮다.

일반관리비율을 발생가정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디자인기업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태조사를 통해 얻는 일반관리비율의 적정성 확보로 얻는 효익이 학술원가용역의 일반관리비율 5% 적용 편익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율과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창작료

디자인사업자의 이윤율은 10%로 엔지니어링대가기준과 소프트웨어대가기준의 이윤율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관리비율 5%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디자인기업의 일반관리비율은 전체 개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인건비의 100% 초과 추정)과 함께 지식기반사업의 타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타 사업과 형평성과 적정이윤의 보장을 통한 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이윤률을 준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이윤을 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윤율은 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게 직접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합계액의 20%~40%로 한다.

(2) 현행 디자인기업 대가기준과 변경기준 비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디자인기업의 현행 대가기준과 변경된 대가기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8> 대가기준(안) 구성요소 도출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내역 | 현행 | 변경(안) | 비고 |
|-----------|---|---|--------------------|
| 1. 인력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 | 명칭 변경 |
| 2.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교원 직위 업무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자 구분요건 국가기술자격 보유와 학력 및 경력 기술사는 특급기술자와 통합 | 디자이너 자격요건과 부합 |
| 3. 인건비단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율 50% 가정한 월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 불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율 100% 퇴직급여 반영100%,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반영 | 월 기준단가 합리성과 적정성 확보 |
| 4. 직접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비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기업 비목 | 디자인기업 실무 반영 |
| 5. 일반관리비율 | 5% | 좌동 | - |
| 6. 이윤율 | 10% | 20~40% | 타 사업 형평성 |

2. 대가기준(안)

(1) 적용범위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은 디자인기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5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개발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 “디자인사업”이라 함은 디자인산업의 전부나 일부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사업자”라 함은 디자인사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디자이너”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디자인분야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분야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공공디자인개발용역”이란 “공공디자인개발용역”과 “공공디자인컨설팅용역”으로 구분한다.
5.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전담기관

-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디자인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사업 대가의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디자인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디자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공공디자인개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 대가의 준용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계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6) 지식재산권의 귀속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사업자에게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와 디자인사업자의 계약에 따른다.

(7) 디자인 제작과 시공의 분리발주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제작과 시설물 시공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8)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디자인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디자이너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디자이너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술연

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전담기관이 퇴직급여충당금, 디자인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가산·조정하여 공표한 디자이너인건비단가에 따른다.

(9)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3자의 저작권사용료, 모형제작비(Mock-up), 도면작성비, 사진 촬영비, 인쇄시안물 제작비, 출력비, 자료 대여료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10) 일반관리비

①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디자인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임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5%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 해당 디자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11) 창작료

창작료란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업무에서 발휘되는 디자이너의 창조력·기획력·기술경험 및 정보 축적의 대가로서 기획료, 라이선스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 양도비, 기술료,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12) 디자이너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이너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담기관이 디자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한 별표2과 같다.

(13)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

- ①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디자인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디자인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14) 디자인 결과물의 시공 감리에 대한 대가 산정

디자인 결과물의 인도 후 제작(시공)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1일 8시간으로 하여 감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와 시간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별표1 : 디자인분야별 대가기준 적용표

별표2 : 디자이너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

별표3 : 디자이너 노임단가

제4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도입방안

디자인 대가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다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

- ① 국가 등은 디자인사업자와 디자인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디자이너의 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중 디자인 관련 직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디자인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의 정의

별첨 1)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표준계약서

○○○ (이하 '갑' 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 디자인 개발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은 갑이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을의 제안서와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을이 갑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시하고 갑이 채택한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4.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제시한 디자인시안을 의미한다.
5.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을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컨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갑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보수)

- ① 을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_____ 원(₩ _____)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을의 디자인 개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갑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이내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이내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한 경우 을은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①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용역”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 을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성과

- 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갑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갑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제3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당해 계약에 따라 갑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갑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②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갑에게 제시된 을의 인도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갑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으로 한다.
- ②점수 후 인수한 최종인도물에 대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을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 ①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③비밀준수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시점부터 1년간 준수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갑은 을이 “00 디자인 용역”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갑과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갑은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중지료 인하여 받

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②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통지)

①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상호합의)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 .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별첨 2)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이하 '갑' 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은 갑이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제안서와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갑의 콘텐츠'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사진, 인쇄물 등 갑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3. '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을이 갑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시하고 갑이 채택한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4.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제시한 디자인시안을 의미한다.
5.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을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컨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갑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제3자의 창작물'은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갑과 을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적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호 등)을 의미한다.

8.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

제3조(보수)

① 을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_____ 원(₩ _____)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을의 디자인 개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갑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제3자 창작물 사용료
5.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등 외주비용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이내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후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이내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자 창작물 사용료는 제3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한 경우 을은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①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용역”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거 을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성과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갑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갑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갑의 콘텐츠는 갑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갑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②당해 계약에 따라 갑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갑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갑에게 제시된 을의 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④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을은 갑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 ①을은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 ②을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으로 한다.
- ③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을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 ①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갑은 을이 “00 디자인 용역”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 ①갑은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

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갑과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 ① 갑은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 ①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②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통지)

- ①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상호합의)

-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②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 .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별첨 3)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이하 '갑' 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은 갑이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제안서와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갑의 콘텐츠'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사진, 인쇄물 등 갑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3. '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을이 갑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시하고 갑이 채택한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4.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제시한 디자인시안을 의미한다.
5.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을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컨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갑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제3자의 창작물'은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갑과 을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적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호 등)을 의미한다.

8.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

제3조(보수)

① 을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_____ 원(₩ _____)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을의 디자인 개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갑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제3자 창작물 사용료
5.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등 외주비용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이내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후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이내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자 창작물 사용료는 제3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한 경우 을은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①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용역”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거 을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성과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갑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갑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갑의 콘텐츠는 갑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갑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②당해 계약에 따라 갑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갑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갑에게 제시된 을의 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④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을은 갑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을은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②을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을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갑은 을이 “00 디자인 용역”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갑과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갑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 ① 갑은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 ①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보증기간)

- ①을은 최종인도물의 검수 후 3개월간 최종 인도물의 유지와 업데이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최초 제안서의 용역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인도물의 결함 또는 오류를 수정한다.
- ②최종인도물의 규격 또는 개발범위를 초과한 성능의 개선 또는 갑의 요청에 의한 개발은 상호합의하에 추가적인 보수를 청구한다.
- ③유지와 업데이트를 위한 기술적 지원은 보증기간 내 최대 ()시간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무상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를 청구한다.

제19조(운영관리)

- ①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최종인도물의 운영관리를 20 . . ~20 . . 까지 위탁한다.
- ②운영 관리에 대한 을의 보수는 월 일금_____원으로 한다.
- ③위탁운영관리기간 동안 최종인도물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 추가 등에 따른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②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통지)

①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상호합의)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 .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별첨 4) 디자인사업대가의 기준

디자인사업대가의 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디자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5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디자인개발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디자인사업”이라 함은 디자인산업의 전부나 일부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사업자”라 함은 디자인사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디자이너”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디자인분야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분야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디자인개발용역”이란 “디자인개발용역”과 “디자인컨설팅용역”으로 구분한다.
5.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디자인대가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사업 대가의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디자인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디자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사업대가 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공공디자인개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계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디자인사업자에게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와 디자인사업자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디자인 제작과 시공의 분리발주)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제작과 시설물 시공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9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디자인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디자이너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디자이너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전담기관이 퇴직급여충당금, 디자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가산·조정하여 공표한 디자이너인건비단가에 따른다.

제1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3자의 저작권사용료, 모형제작비(Mock-up), 도면작성비, 사진촬영비, 인쇄 시안물 제작비, 출력비, 자료 대여료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

- ①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디자인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임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5%로 계산한다.
-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 해당 디자인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2조(기술료)

기술료란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 창작 또는 디자인컨설팅에 대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교육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일반관리비

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3조(디자이너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디자이너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담기관이 디자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한 별표1과 같다.

제14조(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

- ① 디자이너 노임단가 적용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디자인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디자인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15조(디자인 결과물의 시공 감리에 대한 대가 산정)

디자인 결과물의 인도 후 제작(시공)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1일 8시간으로 하여 감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와 시간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별표1 : 디자이너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

별표2 : 디자이너 노임단가